

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

검 토 보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최정훈 의원 등 7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5년 4월 11일

○ 회부일자 : 2025년 4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으로 충청북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도지사와 공직자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을 규정함(안 제5조).
- 청렴마일리지제 운영에 대해 규정함(안 제10조~제12조).
- 청렴도 평가에 대해 규정함(안 제13조~제15조).
- 청렴이행서약제 시행에 대해 규정함(안 제16조~제18조).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필요성

- 본 조례안은 4개 장,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, 장별 규정은 아래와 같음.

장	제1장 총칙	제2장 충청북도 청렴마일리지제	제3장 충청북도 청렴도 평가	제4장 청렴이행서약제
조 문	제1조(목적) 제2조(정의) 제3조(책무) 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제6조(사업 시행 등) 제7조(협력체계) 제8조(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) 제9조(표창)	제10조(청렴마일리지 지제의 운영) 제11조(포상 및 시상) 제12조(성과관리 연계)	제13조(청렴도 평가) 제14조(평가 기준) 제15조(평가 결과)	제16조(청렴이행 서약제) 제17조(제출 시기) 제18조(불이행에 대한 조치)

○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및 도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, 공무직원, 청원경찰, 청원산림보호직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의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,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,

-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시행,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, 청렴도 평가 및 청렴이행서약제의 시행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【참고】

- 우리 도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·도에서 유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.

시·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*	세종
제정일	17.9.21.	22.10.26.	24.5.20.	12.5.21.	24.5.31.	16.10.20.	11.6.9. 23.9.21.	-
시·도	경기	강원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제정일	11.6.23.	24.7.5.	23.8.10.	15.12.28.	14.10.10.	21.4.1.	22.10.18.	-

나. 주요 조문의 검토

- ‘안 제2조’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한 것으로, “공직자”, “부패행위”, “청렴마일리지제”에 관하여 규정함.
 - 제1항은 본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“공직자”로 정의하고, 충청북도 공무원 외에 공무원·청원경찰·청원산림보호직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였고, 이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‘안 제3조’는 제1항에서 도지사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책무를, 제2항에서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함.
 - 제2항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(공직자의 청렴의무)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규정으로, 제1항의 규율 대상인 도지사와 차이가 있어, 향후 별개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.
- ‘안 제4조’는 청렴 및 반부패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,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그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.
 -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합성을 위하여 “청렴 및 반부패 정책”을 “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”로 표현을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.
- ‘안 제6조’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.
 - 본 조문의 제목은 “사업 시행 등”이나, 본 조문에서 사업 이외의 내용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, 조문의 제목을 “사업 시행”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.
- ‘안 제8조’는 제1항에서 사업 시행을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에

따른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하여, 제2항에서 개인정보의 최소 범위 수집 제한에 관하여 규정함.

- 제2항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,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6조(개인정보의 수집 제한)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보이므로, 해당 법률의 조문을 명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, 청렴마일리지제도, 청렴도 평가 및 청렴이행서약제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,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, 조례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